



복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I (A4BL)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9.06.(금)]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9.0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수원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9.06.(금)	24.09.19.(목)	24.09.20.(금)	24.09.23.(월)	24.09.27.(금)	24.09.28.(토)~ 24.10.04.(금)	24.10.08.(화)~ 24.10.10.(목)

1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9.19.(목)	24.09.20.(금)	24.09.23.(월)	24.09.27.(금)	24.09.28.(토)~ 24.10.04.(금)	24.10.08.(화)~ 24.10.10.(목)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복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복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12번지)		

2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공동주택 – 38953 (2024.09.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A4블록 공동주택용지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8개동 총 768세대 중 일반공급 309세대
[특별공급 459세대(기관추천 76세대, 다자녀가구 76세대, 신혼부부 138세대, 노부모부양 23세대, 생애최초 14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7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516	01	084.3693B	84B	84.3693	28.0603	112.4296	94.2684	206.6980	55.4695	374	37	37	67	11	71	223	151	1	
	02	084.9796C	84C	84.9796	28.7294	113.7090	94.9502	208.6592	55.8979	394	39	39	71	12	75	236	158	2	
합 계											768	76	76	138	23	146	459	309	3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는 일반공급 세대수에 포함되었습니다.

3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공급금액 표

주택형	동호 라인별	층수	세 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계약 시	2차 1개월 이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입주 지정일
										2025. 02.25.	2025. 06.15.	2025. 10.15.	2026. 09.15.	2026. 11.15.	2027. 02.15.		
84B	101~107동 1.4호 108동 3호	1층	14	647,855,851	372,674,149	-	1,020,530,000	51,026,500	51,026,500	102,053,000	102,053,000	102,053,000	102,053,000	102,053,000	102,053,000	306,159,000	
		2층	14	647,855,851	340,274,149	-	988,130,000	49,406,500	49,406,500	98,813,000	98,813,000	98,813,000	98,813,000	98,813,000	98,813,000	296,439,000	
		2층 (108동 3호)	1	647,855,851	361,834,149	-	1,009,690,000	50,484,500	50,484,500	100,969,000	100,969,000	100,969,000	100,969,000	100,969,000	100,969,000	302,907,000	
		3층	15	647,855,851	361,874,149	-	1,009,730,000	50,486,500	50,486,500	100,973,000	100,973,000	100,973,000	100,973,000	100,973,000	100,973,000	302,919,000	
		4층	15	647,855,851	361,874,149	-	1,009,730,000	50,486,500	50,486,500	100,973,000	100,973,000	100,973,000	100,973,000	100,973,000	100,973,000	302,919,000	
		5층	15	647,855,851	372,674,149	-	1,020,530,000	51,026,500	51,026,500	102,053,000	102,053,000	102,053,000	102,053,000	102,053,000	102,053,000	306,159,000	
		6~7층	30	647,855,851	383,574,149	-	1,031,430,000	51,571,500	51,571,500	103,143,000	103,143,000	103,143,000	103,143,000	103,143,000	103,143,000	309,429,000	
		8~10층	45	647,855,851	394,374,149	-	1,042,230,000	52,111,500	52,111,500	104,223,000	104,223,000	104,223,000	104,223,000	104,223,000	104,223,000	312,669,000	
		11~15층	74	647,855,851	405,174,149	-	1,053,030,000	52,651,500	52,651,500	105,303,000	105,303,000	105,303,000	105,303,000	105,303,000	105,303,000	315,909,000	
		16~20층	61	647,855,851	415,974,149	-	1,063,830,000	53,191,500	53,191,500	106,383,000	106,383,000	106,383,000	106,383,000	106,383,000	106,383,000	319,149,000	
		21~차상층	75	647,855,851	426,874,149	-	1,074,730,000	53,736,500	53,736,500	107,473,000	107,473,000	107,473,000	107,473,000	107,473,000	107,473,000	322,419,000	
		최상층	12	647,855,851	848,874,149	-	1,496,730,000	74,836,500	74,836,500	149,673,000	149,673,000	149,673,000	149,673,000	149,673,000	149,673,000	449,019,000	
최상층 (107동 1.4호, 108동 3호)	3	647,855,851	819,834,149	-	1,467,690,000	73,384,500	73,384,500	146,769,000	146,769,000	146,769,000	146,769,000	146,769,000	146,769,000	440,307,000			
84C	101~107동 2.3호 108동 1.2호	1층	14	652,540,196	324,219,804	-	976,760,000	48,838,000	48,838,000	97,676,000	97,676,000	97,676,000	97,676,000	97,676,000	97,676,000	293,028,000	
		2층	14	652,540,196	293,219,804	-	945,760,000	47,288,000	47,288,000	94,576,000	94,576,000	94,576,000	94,576,000	94,576,000	283,728,000		
		2층 (108동 1.2호)	2	652,540,196	313,919,804	-	966,460,000	48,323,000	48,323,000	96,646,000	96,646,000	96,646,000	96,646,000	96,646,000	289,938,000		
		3층	16	652,540,196	313,919,804	-	966,460,000	48,323,000	48,323,000	96,646,000	96,646,000	96,646,000	96,646,000	96,646,000	289,938,000		
		4층	16	652,540,196	313,919,804	-	966,460,000	48,323,000	48,323,000	96,646,000	96,646,000	96,646,000	96,646,000	96,646,000	289,938,000		
		5층	16	652,540,196	324,219,804	-	976,760,000	48,838,000	48,838,000	97,676,000	97,676,000	97,676,000	97,676,000	97,676,000	293,028,000		
		6~7층	32	652,540,196	334,619,804	-	987,160,000	49,358,000	49,358,000	98,716,000	98,716,000	98,716,000	98,716,000	98,716,000	296,148,000		
		8~10층	48	652,540,196	345,019,804	-	997,560,000	49,878,000	49,878,000	99,756,000	99,756,000	99,756,000	99,756,000	99,756,000	299,268,000		
		11~15층	78	652,540,196	355,319,804	-	1,007,860,000	50,398,000	50,398,000	100,786,000	100,786,000	100,786,000	100,786,000	100,786,000	302,388,000		
		16~20층	62	652,540,196	365,719,804	-	1,018,260,000	50,918,000	50,918,000	101,826,000	101,826,000	101,826,000	101,826,000	101,826,000	305,478,000		
		21~차상층	80	652,540,196	376,119,804	-	1,028,660,000	51,438,000	51,438,000	102,866,000	102,866,000	102,866,000	102,866,000	102,866,000	308,598,000		
		최상층	12	652,540,196	780,219,804	-	1,432,760,000	71,638,000	71,638,000	143,276,000	143,276,000	143,276,000	143,276,000	143,276,000	429,828,000		
최상층 (107동 2.3호, 108동 1.2호)	4	652,540,196	752,479,804	-	1,405,020,000	70,251,000	70,251,000	140,502,000	140,502,000	140,502,000	140,502,000	140,502,000	140,502,000	421,506,000			

4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구분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계약금	잔금
주택형(㎡)			
84B	7,470,000	1,000,000	6,470,000
84C	7,540,000	1,000,000	6,540,000

5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동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기관추천(국가위협(해외건설) 근로자만 해당)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6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7 기타사항